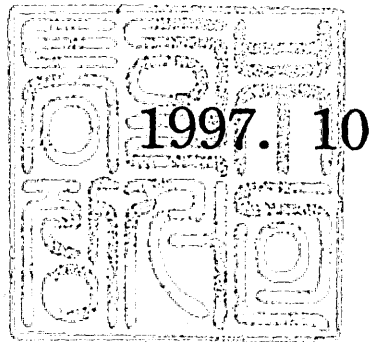


통일고문 해외방문활동 참고자료

통일 정책 추진 현황

제14차



통 일 원

〈 차 례 〉

1. 정부의 통일정책 기초.....	1
2. 북한의 통일정책 기초.....	5
3. 최근 북한현황.....	10
4. 남북관계의 현안.....	17
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17
나. 4자 회담.....	19
다. 대북 식량지원.....	23
라. 북한 핵문제.....	27
마. 경수로 건설지원.....	32
바. 남북교류협력 현황.....	38
사. 주한미군 철수 문제.....	47
아. 이산가족문제 해결 노력.....	48
자.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본입장.....	49
차.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	50
카. 남북한 경제지표 비교.....	52

1.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

가.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1) 추진 방안

-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상호간의 동질성을 먼저 회복함으로써 민족공동체를 건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체제의 통합과 국가의 통일을 이루어 나감

2) 통일의 3단계

- ① 화해·협력단계: 적대와 대립관계를 화해·협력 단계로 전환
- ② 남·북연합단계: 공존공영과 평화정착을 통한 경제·사회공동체 형성·발전
- ③ 통일국가 완성단계: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 완성

3) 통일의 원칙

- ① 자 주: 우리 민족의 뜻에 따라, 우리 민족의 역량에 의해 자주적 통일
- ② 평 화: 전쟁이나 상대방에 대한 전복을 통해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평화적으로 통일
- ③ 민 주: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민주적 통일

4) 통일국가의 미래상

- 7천만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며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와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족공동체

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특징**

1) 기능주의적 접근방식

- 남과 북이 제반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상호간의 동질성을 회복함으로써 분단과 함께 상실된

민족공동체를 우선 희생시킨후, 정치적 통합의 여건이 성숙되면 궁극적으로 단일민족국가에로의 완전한 정치적 통합을 달성한다는 원칙.

2) 통일의 중간단계 설정

0 남북연합이라는 중간과정을 설정한 것은 통일을 향한 남·북한의 분단현실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방안임.

3) 자유민주체제하의 통일

0 통일조국은 민족성원 전체의 자유와 복지가 보장되는 민주공화국으로서, 통일국가의 체제를 고려치 않는 통일지상주의자의 주장을 배격함.

다. 통일정책 추진현황

0 한반도 평화정착

- 한반도에서 평화의 토대를 확고히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
- 평화정착을 위해 4자회담 추진(⇒ 4자회담 참고)

0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변화 유도

- 대북식량지원(⇒ 대북식량지원 참고)
- 남북경협(⇒ 남북교류협력 참고)
- 대북경수로지원(⇒ 대북경수로지원 참고)

0 북한 급변사태 대비

- 북한의 급변가능성 배제 불가
-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중

2. 북한의 통일정책 기초: 고려연방제

가. 기본목표(북한헌법 제5조와 노동당 규약 전문에 명시)

0 남한에서의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통해 한반도의 공산통일 이룩

- 미군철수와 공산혁명

0 기본목표 추진전략: 3대 혁명 역량 조성

- 북한의 혁명기지화

- 남한의 혁명 역량 강화

- 국제혁명 역량 조성

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개요

1) 대남 전제조건

0 반공정책과 국가보안법 폐지

0 정당, 사회단체 및 개인의 연공활동 합법화

- 현 남한정권 퇴진후 인민정권으로 교체
- 미·북간 평화협정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2) '연방공화국'의 조직과 기능

< 연방 조직과 기능의 기본원칙 >

- 남북한의 상이한 정치사상과 제도 인정
- 연방공화국은 통일과정의 과도적 조치가 아닌 완전한 연방형식의 통일국가
 - 1990년 과도적 조치인 국가 연합 형식으로 수정
-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자주 독립국가로 블록 불가담 중립정책 유지

< 연방의 조직 >

- 남북의 동수 대표와 해외동포대표로 최고민족연방회의와 그 상설 기구로서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

-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는 남북이 공동의
장과 공동위원장을 각각 선출, 그들이 윤번제로 운영
- 잠정적으로 지역 자치 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
고, 장차 중앙정부의 기능을 높여 나감으로써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

3) 연방공화국 설립후 시행되어야 할 정책 (10대 시정방침)

- 국가활동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주정책 실시
- 전지역, 전사회 영역에서의 민주주의 실시와 민족의
대단결 도모
- 경제적 합작과 교류 실시 및 민족경제의 자주적 발전
도모
- 과학·문화·교육분야의 교류와 협조를 통한 민족문화
전통, 교육 발전
- 남·북한간의 교통, 체신 수단의 자유로운 이용 보장
- 노동자, 농민등 전체 노동자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복
지증진

-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연합군을 조직하여 외래침략으로부터 민족을 보호
- 해외동포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보호
- 통일이전 대외관계의 올바른 처리와 두 지역 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정
- 통일국가로서의 우호적,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실시

다. **고려연방제의 특징**

1) 한국의 이념과 체제를 부정하는 전제조건 제시

- 연방제 구성의 원칙으로 사상과 제도를 인정·용납하지 않고 하면서, '전제조건'을 들어 한국의 이념, 제도, 정치질서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모순임.

2) 공산주의 실현을 위한 수단

- 고려연방제는 대남 적대통일노선을 명시한 노동당 규약에 근거한 통일방안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가변성이 있으며, 당 규약보다 하위 개념임.

- 따라서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는 연방제가 실시되더라도 연방제는 당규약 실현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사회주의 혁명원리상 남한의 인민 민주주의 혁명 달성후에는 사회주의 혁명으로 이해케 됨.

3) 통일전 남북간 교류협력 거부

- 고려연방제는 연방제 실현후에 시행할 10대시정방침을 제시하고 있어 결국 연방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일체의 교류, 협력을 거부하고 있음.

4) '연방제'용어의 의미

- 북한은 두체제의 공존지향성 통합협태의 국가연합 (Confederation)을 표방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영문 표기: Democratic Confederal Republic of Koryo)하고, 내용상으로는 연방정부가 군사권·외교권 등의 대외주권을 행사하는 완전한 형태의 연방제 (Federation)인 것 같이 선전을 하고 있으나, 사실은 '전제조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공산주의적 병합 (Annexation)을 연방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음.
- 원래 공산주의에서 '연방'이라는 것은 공산주의가 비 공산주의적 요소를 흡수, 통합하는 공산화과정의 과

도적 수단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북한도 “사회주의적 연방국가제도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실현의 제도임”을 1981.2.2.자 노동신문에서 자인하고 있음.

3. 최근 북한현황

가. **김정일 권력승계 동향**

- 북한은 노동당 평안남도 대표회(9.21), 인민군 대표회(9.22)에서 김정일을 당총비서로 추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9.22, 중앙방송)
- 김정일의 당총비서 추대작업이 시작된 것
 - 다른 시·도 당 대표회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
- ⇒ 노동당 창건일(10.10)을 전후하여 당 중앙위원회에서 김정일이 당총비서가 될 가능성이 농후
- 김정일의 권력승계후 정책변화 및 인사개편 방향은 불투명

나. **북한 경제난 실태**

1) 일반현황

○ 북한의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음.

- GNP, 대외교역 등 모든 경제지표는 북한 경제가 스스로 회복 불가능함을 시사
- 사회주의체제 모순, 소련 등 구공산권 붕괴, 석탄·원유 등 에너지 부족, 군수산업 위주의 자원배분 등으로 경제 전반이 위축

○ 지난해 북한은 3.7% 마이너스 성장(7년 연속)

- GNP: 2백14억 달러(우리의 1/22)
- 1인당 GNP: 9백10달러(우리의 1/12)
- 대외교역은 19억 8천만 달러(우리의 1/141)

※ '96년 남북교역은 2억 5천만 달러('95년 대비 21.5% 감소)로, 북한의 세번째 교역상대

2) 식량난

○ 식량난의 정도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존재

- 북한 스스로 과장하는 측면

○ 올해 하반기, 북한의 식량사정은 비교적 안정될 것으로 평가

- 10월말까지 수요량 190만톤 중 현재 확보된 양은 160만톤 정도(1일 성인기준 450g 배급시)

- WFP 추가지원 및 교역 등을 통한 도입분 감안시, 부족분은 더욱 감소

○ 북한주민들의 식량난은 총량적 부족도 문제지만

- 에너지 부족에 따른 수송상 애로 발생으로 배급체계가 부분적으로 마비되고

- 평양지역, 군인과 당·정관료 우선배정 등에 따라

- 계층별, 지역별 기아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 더 큰 문제

3) 올해 작황 평가(가뭄피해 현황)

- 올해 북한은 가뭄과 해일 등으로 적지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
 - 지금까지 피해만으로 80만톤 이상 감수 예상
 - * 작년 수해피해(48만톤)를 능가
 - 내년 식량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
 - * 260만톤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

- 올해 7월까지 북한 지역 강우량은 예년의 57% 수준(302mm)
 - 특히 벼 가지치기·이삭형성기, 옥수수 수정시기인 6-7월에 강우량이 예년의 33%(118mm)에 불과
 - 저수지 저수율도 50%로 감소되고, 일부 저수지가 말라붙는 등 관개능력까지 일부 상실

- 8월 들어 100mm 이상 비가 내렸으나 회복이 어려운 상태

4) 에너지난

- 에너지난은 경제전반을 위축시킨다는데 또 다른 심각성
 - 공장가동율이 30%에도 못미치는 상황

- 원유도입 및 석탄생산 감소가 주 요인
 - 경화결제 요구 등으로 원유도입이 감소
 - * '90년 247만톤 → '96년 93.6만톤
 - 갱도의 심부화, 채탄시설의 낙후, 노동의욕의 감소가 석탄생산이 줄어드는 주 요인
 - * '89년 4,330만톤 → '96년 2,100만톤

5) 전력난

- 올 상반기 북한 전력생산은 51억2천만kWh(수력43억7천 kWh, 화력 7억5천만kWh)
 - 지난해 동기대비 절반 수준에도 미달
 - * 평균 설비이용률은 수력 32.2%, 화력 34.1%로 추정

※ 북한 전력공업부 부부장, 조총련계 조선신보와 회견

- 화력발전 능력은 310만kW이나, 현재 50만kW만 가동중

* 중유를 사용하는 응기화력발전소(20만kW)만 풀가동

0 전력난의 원인

- 원유도입과 석탄생산이 감소

- 발전소와 소비지와의 거리가 멀고, 전선의 노후 등으로 중간손실이 많은 점

- 식량지원 대가로 중국 동북지방에 송전 등

다. **북한의 전도**

1) 김정일 권력승계전후 권력개편 및 정책노선

0 김정일 권력승계를 전후하여 대규모 권력개편과 노선 채택은 필연적

- 사회주의 체제에서 권력승계는 사상투쟁 및 권력투쟁과 맞물려 온 것이 사실

- 정무원총리, 인민무력부장, 국가안전보위부장 등 공석인 요직의 충원문제

- 심각한 경제난으로 차기「전망계획」제시도 곤란

○ 개혁·개방 등 근본적 변화는 기대 난망

- 체제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 우려

* 북한 중앙방송·노동신문 등은 「개방은 곧 몰락」이라고 선전

※ 북한은 김정일의 노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8.4 출판했다고 최근 보도

- 기본적으로 기존의 통일노선 및 대미·일 전략을 유지

- 그러나 김정일 명의의 논문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직접 언급한 것은 최초

⇒ 북한이 앞으로 제한적으로나마 어떠한 생존전략을 추진할 것인지 주목할 필요

4. 남북관계의 현안

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 6.25당시 체결된 정전협정은 40여년간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커다란 역할을 해 왔음
- 남과 북은 '92년 2월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5조)에서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 노력하며, 공고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정전협정을 준수하기로 합의

< 북측 조치 >

- 북한측은 '93.4.4 중감위 체코대표단 강제 축출(클로초크 소장외 2명)에 이은 외교부 성명('94.4.28)을 통해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주장
 - 북측, 군정위를 대신한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설치('94.5.24)
 - 군정위 중국측 대표단 철수 ('94.12.15)

- 중감위 폴란드 대표단(오프차레크 소장외 2명) 축출 ('95.2.24)을 통한 중감위 무력화
-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성명('95.5.3)에 의한 북한측 중감위 사무실 폐쇄 및 북한측 지역에 대한 출입 제한
- 북한 외교부 대변인 담화('96.2.22)를 통해 대미 잠정 협정 제의
- 북한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96.4.4)에서 DMZ 불인정을 선언하고, 3차에 걸쳐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에 무장병력을 투입하는 등 점진적으로 정전 체제를 무력화시켜왔음.

< 우리측 조치 >

- 북한측의 정전체제 무력화 책동에 대해 정부는 군정위 및 중감위의 정상화를 비롯한 정전체제 정상화를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남북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 견지
 - 광복50주년 대통령 경축사('95.8.15)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원칙(남북 당사자간 협의·해결, 관련국 협조, 남북 합의사항 존중)을 천명

- 김영삼 대통령은 클린턴 미 대통령과 제주도에서 정상회담('96.4.16)을 개최하여 북한에 대해 4자회담 개최를 제의하는 「제주선언」을 발표

나. 4자 회담

1) 제의배경

- 한반도에서 안정적이고 실효적인 평화체제 수립을 목표로 제의
 - 남북한과 정전협정 서명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이 한반도 평화문제 해결을 위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판단에 따라 '96.4.16 한미 공동으로 4자회담을 제의

2) 기본입장

- 4자회담의 기본목표는 한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 남북한 주도에 의해 새로운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미·중은 이를 보장하는 역할 수행

○ 아울러 4자회담에서는 평화체제 구축문제와 함께 긴장 완화 및 신뢰구축조치 문제도 협의

- 남북기본합의서 정신과 내용에 바탕을 두고 추진

3) 추진 경과

○ '97.3.5 뉴욕에서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한 가운데 「4자회담 공동설명회」를 개최하여 4자회담 제의 배경 및 취지에 대한 대북 설명

○ '97.4.16~4.21 「공동설명회 후속협의」에서 북한측은 4자회담의 '원칙적 수락' 입장 표명

○ '97.8.5~8.7, 4자회담 1차 예비회담을 뉴욕에서 개최, 본회담 의제와 절차문제 등 협의

- 절차문제와 관련, 본회담 개최시기, 장소, 대표수준, 운영방식 등은 잠정 합의

· 시 기 : 예비회담 종료후 6주 이내

· 장 소 : 스위스 「제네바」

· 대표수준 : 외무장관이 참석, 장관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외무장관이 임명하는 고위급대표 참석

· 운영방식 :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설치, 본회담 사회는 4개 참가국간 윤번제, 회의언어는 한·영·중 등 3개국어 사용

- 의제문제에 대해서는 쌍방 입장차이로 미합의
 - 우리측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문제」와 「긴장 완화 및 신뢰구축 문제」를 양대 의제로 제시
 - 북한측은 「조선반도 평화보장체제 수립문제」를 기본의제로 하되, 「남한과 주변지역에서 미군철수 문제」, 「미·북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세부의제로 설정 주장
 - 한편, 북한측은 남·북·미 3자간 별도 협의를 요청, 식량지원 사전보장 요구
- 지난 8.5 제1차 예비회담에 이어, 9.18-19 제2차 예비회담이 뉴욕에서 개최
- 4자회담 의제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타결 실패
 -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미·북평화협정」, 「외부로 부터의 군사장비 도입금지」 등으로 의제를 세부화할 것을 요구
- 이번 북한 태도로 볼 때, 북한은 현 시점에서 4자회담 성사를 서둘지 않겠다는 것으로 평가

- 기존 2개의제 외에 「외부로 부터의 군사장비 도입 금지」를 새로운 의제로 추가
- 경직된 자세로 일관
- 정부는 4자회담의 정신과 취지를 계속 견지하면서 의연히 대처
 - 유관국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4자회담 성사를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

4) 평가 및 전망

- 4자회담 제의 이후 1년 4개월만에 관련 4개국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접촉을 가진 데 의의
- 북한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를 논의하려는 진지한 자세보다는 4자회담을 지렛대로 하여 미·북관계 개선과 식량지원을 확보하려는 태도
- 북한도 식량난 해결과 대미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4자회담 개최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 4자회담 개최를 무작정 지연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

다. 대북식량지원

1) 북한 식량문제의 본질

- 북한은 '8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의 구조적 문제로 매년 200만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
 - 집단농장제도로 인한 노동의욕 저하,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비료·농약 부족, 수송체계 미비 등이 주원인
 - 지난 2년간 계속된 수해는 식량사정을 악화시킨 것이지만 근본원인은 아님.
- 따라서 북한의 식량문제는 농업부문의 개혁 등 식량부족사태를 가져온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북한당국의 자발적인 해결노력이 필요
- 한편 북한은 과도한 군사비와 정치선전비를 사용하고 있는 바 이러한 자원배분 왜곡을 시정하는 자구노력 필요

- GNP('95년 223억불)의 25%에 달하는 군사비 56억 불과 정치선전비(연 9억불)의 일부만 줄여도 식량문제 해결 가능

2) 우리의 대북지원 노력

- o 우리는 북한당국의 적대적 정책에도 불구하고,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노력 경주
 - 정부차원에서는 '95년 2억3천2백만불 상당의 쌀 15만톤지원과 유엔기구를 통한 '96년 300만불에 이어, '97년에도 1,600만불 상당의 식량을 지원하고, 추가로 1,000만불 상당의 아동용 식품·의약품·영농장비 등을 지원할 예정
 - 민간차원에서도 한적을 창구로 남북적십자간 직접 전달과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1,646만불 상당의 식품과 생필품을 북한주민들에게 전달
 - * '95년이후 우리의 지원총액 2억 8,665만불은 동일기간내에 WFP·미국 등 전체 국제사회가 지원한 총량 2억 9,772만불과 동일한 수준

○ '97년도 8.15 경축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북한식량문제의 근원적 해결에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천명

- 그 동안 우리 정부가 준비해 온 「민족공동발전계획」을 남북대화를 통해 협의·추진함으로써, 북한의 식량난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협력을 모색

3) 바람직한 대북지원 방향

○ 북한에 대한 지원은 △북한식량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유도하고, △북한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정부는 위와같은 입장에서 대북지원과 관련, 다음과 같은 방침을 견지

-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한적을 통해서 질서있게 추진(남북간 합의)

- 정부차원의 지원은 북한의 4자회담등 제대로된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식량문제의 근원적 해결차원에 접근

- 국제적 차원에서 유엔회원국의 일원으로서 유엔 기구의 대북지원에 대해 우리의 경제력 등에 상응한 규모로 참여
- 0 아울러 북한에 대해서도 남북관계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하여 지원물품을 군용으로 전용하지 않는다는 투명성을 보장하고, 농업부문 개혁과 군사비 감축 등 식량난 해소를 위한 자구적 노력을 취하도록 촉구

4)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방향

- 0 북한이 여전히 우리를 「혁명」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남북관계 현실을 감안할 때,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일정한 창구를 통해 질서있게 추진할 필요
- 0 정부가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을 한적을 통해 하도록 한 것은 현재 민간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북전달 방법중 한적이 실효성면에서 가장 적절
- 남북적십자간 합의(5.26, 7.25)를 통해 구호물품의 남북 직접전달과 함께 분배지역 확대, 지정기탁과 기증자 표기, 분배결과 확인 등 그동안 민간단체가 희망한 사항을 대부분 반영

- 한적 인도요원들이 북한의 신의주, 만포, 남양, 남포, 흥남에 가서 직접 인도·인수하고, 우리측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그대로 보냄으로써 남북간 교류·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남북간의 인도적 문제는 쌍방 적십자사를 통해 협의·해결하는 것이 남북간의 관례이자 합의사항

- '84년 북한의 수재물자 인도·인수시 쌍방 적십자사를 통해 실시
- 남북기본합의서(교류협력부속합의서 제3장 제18조)는 「상대측에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서로 도우며, 그 실천문제는 쌍방 적십자 단체들이 한다」고 규정

라. **북한 핵문제**

1) 배경

- 북한은 1985.12.12 NPT 조약에 가입하였으나 동 조약 가입후 18개월이내 체결키로 되어 있는 IAEA 안전조치 협정 체결을 계속 거부

- 북한은 1991.12.31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한 후 1992.1.3 IAEA 안전조치 협정에 서명
- 1992.5-1993.2까지 6차에 걸쳐 IAEA 사찰 결과,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 추출량과 IAEA 측 추정치간에 심각한 불일치가 발생
- 이에따라 「특별사찰」 문제가 중대 현안으로 대두되자 북한은 1993.3.12 NPT 탈퇴를 선언

2) 현황

- 미국과 북한은 1993.3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이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두 차례의 고위급 회담(1993.6 및 1993.7)과 여러 차례의 실무 접촉을 거쳐 1994.9.23-10.21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차 미·북 회담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합의문(Agreed Framework)에 합의함.

* 제네바 미·북합의의 주요내용

- 북한 흑연감속로 원자로의 경수로 발전소로의 대체
 - 미국, 2003년을 목표시한으로 총 발전용량 약 2,000MWe의 경수로 제공

- 미국, 북한의 흑연감속로 동결에 따른 대체에너지(연간 50만톤의 중유)제공
 - 북한, 미국의 경수로 및 대체에너지 제공에 따라 흑연감속로와 관련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해체
 - 경수로와 대체에너지 제공 및 사용후 연료봉 처리를 위한 전문가회의 개최
- 미·북관계 개선
- 본 합의 3개월내에 통신 및 금융거래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무역 및 투자장벽 완화
 - 전문가 회의를 통해 영사 및 여타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 후 상대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 개설
 - 미·북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지는데 따라 영사관계를 대사급으로 격상
- 한반도 비핵화 노력
- 미국,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보장 제공
 - 북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이행
 - 북한, 남북대화에 착수

- 국제적 핵비확산체제 강화
 - 북한, NPT 조약 잔류 및 동 조약에 안전조치 협정이행
 - 북한, 경수로 공급계약 체결 즉시 동결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한 IAEA의 임시 및 일반사찰 수락
 - 북한, 경수로 관련 핵심부품의 인도이전에 특별사찰 수락

- 미국과 북한은 제네바 합의의 이행문제 협의를 위해 '95.5.19-12간 쿠알라룸푸르에서 회담을 갖고, 대북경수로 지원문제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이룩함.
 -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에 있어 한국형 경수로 제공 및 한국의 중심적 역할 확보
 - 경수로 사업 관련 미·북회담은 종결되고, KEDO-북한간 협상개시 합의
 - KEDO 원회원국으로서 한국의 직접 참여 및 주도적 역할 구도 마련
 - 북한의 사용후 연료봉 처리 협조 및 중유전용 방지 방안 확보를 위한 기초 마련

○ 다만 북한은 IAEA 사찰활동에 비협조적

- 핵활동 동결대상에 대한 감시는 허용하고 있으나 사찰봉쇄
- 동결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만 임시 및 일반사찰 허용

3) 전 망

- 북한의 핵활동 동결과 IAEA 감시허용,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일부 완화 및 대체에너지(중유)제공 등, 미·북 합의상의 초기 단계 조치시행
- '95.12.15 KEDO-북한간 공급협정 체결
- '97.8.19 경수로 부지공사 착공
- 북한은 제네바 합의의 이행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므로, 제네바 합의의 파기등 극단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마. **경수로 건설 지원**

1) 추진배경

- '93.3 북한의 핵비확산조약 탈퇴로 대두된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주요관심사로 등장
-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남북관계의 진전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 '94.8.15 경축사를 통해 대북경수로 건설 지원 입장을 천명
- 이러한 우리 정부의 결정이 '94.10 미·북 제네바합의로 이어져 북한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

2) 추진현황

- 사업 추진체계 구축
 -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설치('95.1)
 - 한·미·일 3국 주도하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설립('95.3)
 - 한국전력에 대한 주계약자 지정('96.3) 등

○ KEDO · 북한간 협상을 통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95.12)
- 공급협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의정서 협상 추진('96.4 ~)
 - 「특권 · 면제 및 영사보호」, 「통행」, 「통신」 등 6개 의정서 채택
 - 특히 영사보호 의정서 발효('96.7)로 북한지역에 상주하는 우리측 근로자의 신변안전보장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 마련
- 의정서의 이행과 관련된 세부절차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KEDO · 북한간 실무협상 개최('97.4~'97.7)
 - 통신 · 우편 · 항공 · 통관 · 의료 등 19개 분야 합의서 채택

○ 부지조사 및 부지 인수

- '95.8부터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대한 7차례의 부지조사 실시
 - 한전 등 국내기술진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 주도로 조사

- 7차례에 걸친 조사결과, 부지로서의 적합성이 확인됨에 따라 북한은 부지 인도증 발급('97.7)

0 부지준비공사 추진

- '97.7.2 19개 분야에 대한 합의서 채택으로 착공에 필요한 실무준비 추진
 - KEDO 금호사무소 개설(7.28)
 - 초기 부지정지공사에 필요한 인력(90명) 및 장비 (중장비 50대 등 15,000톤 규모) 투입
 - 경수로 사업부지와 남한간 통신·우편 개통 등
 - △통신망은 일본을 경유, 전용회선 8회선으로 구성
 - △우편은 북경을 경유한 개낭방식으로 운영하되 주소는 한글로 표기
- 8.19 함경남도 금호지구 경수로 사업부지에서 경수로착공식 개최
 - KEDO측에서는 한·미·일을 비롯한 KEDO회원국 대표, 언론취재단, 한전·시공사 대표, 우리측 건설인력 등 약 200명 참석
 - * 우리측에서는 경수로기획단장을 비롯한 정부대표 11명 등 150명 참석

- 북측에서는 원자력총국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기자단 등 80여명이 참석, 착공식에 적극적 관심을 표명

* 북측대표는 공식발언을 통해 미국 또는 KEDO가 경수로제공의 주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우리측 참여기업의 노력을 평가. 특히 비공식 대화시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한국의 중심역할과 남북간 직접대화·접촉의 불가피성을 솔직히 인정

- 금번 부지정지 공사는 부지정지, 사무실, · 숙소 · 식당신축 등을 포함하는 약 4,500만불 규모의 공사로 12개월에 걸쳐 진행

- 향후 재정분담협상 타결시 초기 부지정지 공사는 본공사로 연결 전망

3) 향후 전망

○ 재정분담 협상

- 현재 한·미·일 집행이사국간 협의가 진행중인 개략사업비(ROM)의 규모가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재정분담협상 개시

○ 후속의정서 협상

- KEDO·북한간 협상을 통해 품질보장·훈련·인도 일정 등 6~7개의 후속의정서 체결 필요
- 북한변화 유도 및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정서 협상 추진

4) 경수로사업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 한반도 안정 및 동북아 평화 유지

- 북한 핵동결 유지를 통한 한반도 안정에 기여
- 미·일 등 KEDO 회원국간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한 대북 공동대응 효과 기대

○ 남북관계 개선

- 경수로사업 참여인력의 이동에 필요한 해로·항공로 등 남북간 통행로 구축
- 사업 본격 개시 시점부터는 남북직항로 개설

- 경수로 사업부지와 남한간 통신·우편 교류 실시
 - 착공 2년 경과시점부터는 무궁화위성을 통한 독자 통신망 구축 합의
- KEDO·북한간 채택된 의정서 및 분야별 합의는 향후 남북관계 진전시 선례로 활용
 - 경수로사업은 전반적인 남북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 작용
- 장기간에 걸친 남북주민간 교류·접촉으로 남북간 신뢰회복에 기여

○ 북한변화 유도

-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경수로 공사 착공은 남북 근로자간 직접 접촉으로 북한변화를 유도해 나가는 첫 장 마련을 의미
 - 향후 7~8년에 걸쳐 수천명의 남북 근로자가 원전 건설사업에 함께 종사
- KEDO·북한간의 각종협상은 북한대표들의 인식변화를 통한 북한사회의 국제화·세계화로의 학습효과 기대

바. **남북교류협력 현황**

1) 추진개요

- 남북교류협력은 작년 9월의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 이후 크게 위축되어 오다 북한의 사과조치로 금년들어 신중히 재개
 - 제3국 접촉 및 방북을 단계적으로 확대 허용하면서 교류협력 정상화 노력 전개
 - 경수로사업, 식량지원, 4자회담 추진에 따른 남북관계의 국면변화 추이도 교류협력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
- 망명사건 등 돌발사태 발생으로 야기된 불투명한 정세 속에서도 교류협력 기조 유지
- 한편, 북한은 내부 정치적 사정으로 남북간 직접교류에는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며, 제3국을 통한 우회적 간접교류를 선호
 - 경제분야에서는 경제난 타개 및 실리추구 입장에서 우리 민간기업의 교역·투자유치에는 적극적

* 나진·선봉지역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환율현실화, 자유시장 개설 등 부분적인 개혁 조치를 시행('97.6)

- 사회문화분야에서는 남북 및 해외 정당·단체 연대를 명분으로 교류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대북지원을 목적으로 선별적 대남접근

2) 부문별 현황

① 남북인적교류

<북한주민접촉>

- o '97 1~8월중 북한주민접촉은 총 301건(601명)이 성사되어 전년 동기의 319건(688명)에 비해 다소 감소
 - 경제분야·이산가족 관련이 대부분
 - 사회문화분야에서 남북공동행사가 일부 성사
 - 남·북·미 교회협의회(3.16-3.21, 미국 뉴욕)
 - 남북한 종교지도자 회의(5.30-5.31, 중국 북경)
 - 남북 천주교인 세미나(6.5-6.6, 중국 북경)

- 남북학자 통일문제 학술회의 (6.30-7.1, 중국 북경)
- 제3회 고구려 국제학술회의(7.20~7.21, 일본 동경)
- 남북해외학자 통일문제 학술회의(8.29~8.30, 중국 북경)

<북한주민접촉 현황>

<단위:건(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합계
신청	69 (145)	435 (102)	77 (218)	81 (141)	85 (221)	352 (562)	226 (424)	112 (418)	1,045 (2,231)
승인	40 (67)	45 (94)	68 (232)	87 (158)	77 (180)	86 (238)	438 (635)	129 (307)	970 (1,911)
성사	25 (32)	16 (25)	24 (48)	45 (75)	42 (69)	37 (79)	60 (115)	52 (158)	301 (601)

<남북간 왕래>

○ 북한방문은 9월 현재 62건 642명으로 전년 동기(22건 133명)에 비해 대폭 증가

- 기업인 21건 51명, 사회문화분야 4건 5명, 경수로

지원사업관련 23건 465명, 「한적」의 대북인도지원
관련 14건 121명

* '96년 : 28건 146명

- 기업인 방북에서는 2월 하순이후 (주)대우의 남포공단
합영사업 관련(8건 18명) 방북이 이루어졌고,
 - 태창, 서전어패럴, 녹십자, 에이스침대, 효원물산
등 주로 중소기업에서 교역 및 투자 협의 관계로
방북

- 사회문화분야에서는 일부 종교계 인사가 교회건립
협의 목적 등으로 방북
 - KNCC, 남북교회간의 교류 및 협력방안 모색

- 일부 언론사에서 북한 소재 문화재·자연풍물 취재
를 추진중
 - 중앙일보, 북한문화유적답사 협의; MBC, 금강산
자연다큐멘터리 등 제작 협의

<방북성사 현황>

<단위 : 건(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계
경제		1(4)	1(1)	3(5)	2(4)	3(8)	3(14)	4(9)	4(6)	21(51)
사회문화			1(1)	1(2)	1(1)	1(1)				4(5)
경수로			1(28)	2(82)	2(46)		7(128)	7(119)	4(62)	23(465)
인도지원						4(39)	2(23)	6(44)	2(15)	14(121)
계		1(4)	3(30)	6(89)	5(51)	8(48)	12(165)	17(172)	10(83)	62(642)

② 남북교역

<물자교역>

○ '97년 1~7월중 물자교역 규모는 182,022천불로 작년 동기(143,843천불)대비 26.5% 증가

- 반입 : 116,405천불, 반출 : 65,617천불

* 「한적」의 대북지원물품 및 경수로사업 관련 물품의 반출로 반출비중(36%)이 예년보다 증가

○ 주요 교역품목

▶ 반입 : 철강금속(60.6%), 섬유류(20.9%) 수산물(7.2%), 농임산물·한약재(5.5%) 등

- ▶ 반출 : 섬유류(44.0%), 화학제품(23.1%), 기계전자(4.0%), 경수로 물자(11.2%), 기타 생활용품류(13.2%)

○ 위탁가공교역은 4천7백만여불로 전년 동기 (44,413천불) 대비 5.9% 증가하였으며, 전체교역량 중 25.8%를 차지

- 자켓, 셔츠 등 의류가 대부분이며 칼라TV, 자동차배선 등도 추진

<반입 · 반출 현황>

(단위 : 천불)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합계
반입	11,219	7,954	19,175	29,494	14,345	14,870	19,347	116,405
반출	4,388	11,612	4,359	7,893	11,486	8,647	17,231	65,617
계	15,607	19,566	23,554	37,387	25,831	23,517	36,578	182,022
위탁가공	4,640	5,349	4,291	6,559	8,000	7,068	11,101	47,039

* '95년 : 2억8천7백만불 '96년 : 2억5천2백만불

<선박운항>

○ '97년 상반기중 남북한간 선박운항 회수는 편도기준 180회

- 「남→북」 : 48회, 「북→남」 : 132회

* 작년 상반기 121회 대비 48.8% 증가

- 항구별 운항회수는 출항기준으로 우리측 인천 23회, 부산 18회, 여수 6회 등이며, 북한측은 남포 40회, 나진(선봉) 26회, 해주 20회, 흥남 13회, 원산 9회 등

o 남북한간 선박운항에 따른 물동량은 279,614톤

- 「남→북」 : 126,420톤, 「북→남」 : 153,194톤

* 작년 상반기 159,845톤 대비 74.9% 증가

- 항구별 「남→북」 물동량은 여수(천) 105,878톤, 인천 15,297톤, 부산 5,245톤 등이며, 「북→남」 물동량은 나진(선봉) 73,137톤, 흥남 32,574톤, 원산 15,231톤, 남포 12,522톤 등

<선박운항 현황>

구 분	운 항 회 수 (회)			물 동 량 (톤)		
	남→북	북→남	계	남→북	북→남	계
1/4분기	21	55	76	52,049	52,818	104,867
2/4분기	27	77	104	74,371	100,376	174,747
상반기	48	132	180	126,420	153,194	279,614

③ 남북경협

o 금년도에 10개기업 대해 협력사업자 승인(총 21건)

- 5.22 미흥식품, 신일피혁, 한화, LG전자
- 8.1 삼성전자, 코오롱, 신원, 파라우수산, 금오식품

o 협력사업 3건 승인(총 4건)

- 5.22 (주)태창의 금강산 샘물개발사업
- 8.1 한국통신의 경수로 통신지원사업
- 8. 16 한국전력의 경수로건설 지원사업

<협력사업자의 사업내용>

업종	세부사업
전자·전기 (4)	전자기기 : 대우전자(640만불, 남포), LG전자(450만불, 평양·남포) 삼성전자(500만불, 나·선) 원전건설 : 한전(금호지구)
화학 (2)	PVC제품 : 한화(90만불, 평양·남포) 의약품 : 녹십자(300만불, 평양)
통신 (2)	통신센터 건설 : 삼성전자(700만불, 나·선) 통신망 연결 : 한국통신(서울-금호)
건설 (2)	시멘트싸이로 : 동양시멘트(300만불, 나·선) 하역설비 : 동룡해운(500만불, 나·선)
섬유 (6)	봉제·의류 : 대우(512만불, 남포), 고합물산(686만불) 한일합섬(980만불, 남포), 코오롱(400만불, 평양·남포) 신일피혁(300만불, 나·선), 신원(100만불, 평양)
기타 경공업 (5)	신발 : 국제상사(350만불, 남포) 식품 : 태창(580만불, 고성), 금오식품(40만불) 수산물가공 : 미흥식품(95만불, 나·선), 파라우수산(300만불, 원산· 해주)

3) 종합평가

- 남북교류협력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실질적인 견인차로서
 - 북한의 태도와 남북관계 상황을 주시하면서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견지

- 이러한 기초하에 금년 상반기 동안 정부는 특히 경제 분야에서 기업인 방북, 협력사업(자) 승인 등을 통해 실질적인 남북협력관계를 지향해 나가기 위해 노력
 - 잠수함사건 이전 수준 이상으로 추진기반 확대

- 사회문화분야에서는 종교인방북, 제3국개최 공동학술 행사 등 민간급 접촉·교류가 추진되었으나, 기대 수준에는 미흡
 - *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예관규정」 제정('97.6)으로 사회문화협력을 위한 제도적 절차 마련

- 앞으로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 교류협력분야에서 발전적 조치를 모색할 필요

사. **주한미군 철수문제**

- 1948년 철수했던 미군이 한반도에 다시 진주하게 된 원인은 북측의 남침 때문이었음.
 -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전쟁재발과 동북아 안정에 기여
- 한반도 평화의 위협요소는 북한의 공세적 군사전략이지 주한미군이 아님.
- 한반도 평화에 대한 보장이 없는 현상황에서 전쟁억지력을 갖고 있는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군사적 충돌가능성
 - 남북간 군비경쟁을 유발하여 남북 어느쪽에도 이익이 될 수 없음
 -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의 주둔
- 주한미군은 정치·군사적 상징성 면에서나 세력균형면에서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의 안정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필요
- 한반도에 평화가 완전히 정착되고 주변안보환경이 신뢰할 수 있을 때 한미간에 협의하여 주한미군문제의 장래를 결정

아. **이산가족문제 해결 노력**

-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은 개인의 인도적 문제일 뿐 아니라 민족화해와 남북관계 개선의 필수적 과정

- 1971년부터 적십자회담을 해오다가 이산가족 문제 해결 주체인 남북 당국간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기본합의서」와 「교류협력 부속합의서」에서 완전 합의되었으나 실천을 못하고 있음.

- 정부는 정치·군사문제와는 별도로 우선 해결을 계속 북한측에 촉구해 왔으나 북한측의 거부로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다만 당사자들의 노력을 지원하여 제3국을 통한 생사 확인, 서신교환, 상봉은 꾸준히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북한의 식량난으로 비공식 상봉이 증가추세에 있음.

- 남북이산가족문제는 인도적 문제이자 인권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활동중인 NGO들의 협조가 필요하며 또한 북한은 남북가족간의 교류는 금지하면서도 해외동포와의 교류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제3국을 통한 교류를 계속 지원하
는 한편, 남북간의 회담을 통하여 판문점이나 휴전선 지
역에 면회소와 우편물교환소를 설치하고, 고향방문단의
교환이 실현되고 궁극적으로 자유의사에 의한 가족 재결
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

자.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본입장

- 남북간 현안문제의 포괄적인 협의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
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남북정상간 만남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견지
- 정상회담이 북한측의 사정으로 인해 개최되지 못했으나
개최원칙에 대한 남북간의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 다만 새로운 상황에 부응하여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남북간에 다시 협의되어야 할 것임.
 - 개최시기 문제는 북한의 새로운 지도체제의 등장과 북
한측의 성의여하에 달려 있음.

차.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

-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 자유민주체제를 파괴하려는 행위규제 불가피
 - 세계의 대다수 국가들도 저마다 처한 안보상황에 따라 그 형식과 내용은 상이해도 체제방어를 위한 안보형사법 체계를 갖고 있음.
 - 북한이 대한민국 파괴활동 및 그 선동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의 수호를 위해 방어적이고 자위적인 제도적 장치로서 국가보안법은 필수불가결
 - * 북한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 공산화 통일(노동당 규약)을 이룩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규정
- 우리의 국가보안법이 그동안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수호하는데 지대한 공헌
-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가보안법을 더욱 엄격하게 집행, 인권침해 요소 제거

0 남과 북은 남북화해부속합의서에서 법률적·제도적 장치의 개정 또는 폐기문제를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해결하기로 합의

- 따라서 북한이 대남적화혁명전략을 버리고 남북관계가 한단계 진전하게 될 경우에는, 통일에 대비한 남북법제도 재조정 차원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를 북한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의·검토

카. **남북한경제지표비교 ('96년 기준)**

항 목	단 위	북 한(A)	한 국(B)	B/A(배)
인 구	천 명	23,558	45,545	1.9
경상GNP	억 \$	214	4,804	22.4
1인당 GNP	\$	910	10,548	11.6
경제성장률(GDP)	%	-3.7	7.1	-
무역총액	억 \$	19.8	2,800.5	141.4
(수 출)	억 \$	7.3	1,297.2	177.7
(수 입)	억 \$	12.5	1,503.4	120.3
외 채	억 \$	120.0	1,044.7	8.7
발전량	억 kWh	213	2,055	9.6
원유도입량	만 t	94	9,818	104.4
곡물생산량	만 t	369.0	614.5	1.7
자동차	만 대	0.85	281.3	330.9
조 선	만 G/T	5.0	779.8	156.0
강 철	만 t	120.8	3,890.3	32.2
시멘트	만 t	379.0	5,726.0	15.1
철도 총연장	km	5,112	6,559	1.3
도로 총연장	km	23,369	82,342	3.5